

< 총 연구개발비 중 부처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>

	일반적 적용	비상 매뉴얼 적용
•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	50% 퍼센트 이내	확정
•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	60% 퍼센트 이내	65% 퍼센트 이내
•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	75% 퍼센트 이내	80% 퍼센트 이내
•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		
- 중소기업의 비율이 2/3 이상인 경우	75% 퍼센트 이내	80% 퍼센트 이내
- 중소기업의 비율이 2/3 미만이고 대기업의 비율이 1/3 이하인 경우	60% 퍼센트 이내	65% 퍼센트 이내
• 그 밖의 경우	50% 퍼센트 이내	확정

< 총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 부담 기준 >

	일반적 적용	비상 매뉴얼 적용
•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	15% 퍼센트 이내	확정
•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	13% 퍼센트 이내	
•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	10% 퍼센트 이내	10% 퍼센트 이내
현금 부담 납부기간	협약종료 3개월 전	협약종료 전까지 허용

- ④ 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「공동관리규정」 [별표2] 중 인건비 계상기준 제1호라목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지급 허용

- ④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*, 감염병 발생에 따라 과제 수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**,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 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 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*** 등을 연구개발비 정산에서 폭넓게 인정

* 예: 손세정제, 마스크, 열화상카메라 설치·운영비, 화상회의장 구축·운영비 등

** 예: 기관내선에 따른 연구중단·재개 비용(사전조치 비용 포함) 등

*** 예: 출장여비 취소 수수료, 회의 취소 위약금 등

- ⑤ 단년도 협약을 체결하는 계속과제에 대해 「공동관리규정」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이 부진해더라도 부처에서 차년도 이월을 적극적으로 승인

- ⑥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는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부처의 승인없이 연구개발비 이월